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임만균 의원 외 25명

나. 의안번호 : 제2525호

다.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 안 이 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농업·임업피해,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의3 신설)
- 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 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 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지난 2022년 법 제8조의3 개정(신설)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 금지가 규정되었고, 위반 시 법 제69조(벌칙) 제1항제1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을 통해 개정 조항은 1년 경과 후 시행하고,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는 4년 동안 전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¹⁾를 둔 바 있음.

-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기존 ‘등록제’에서 보유동물 서식환경 기준과 전문인력 기준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로 전환되었음.

1) 부칙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제8조의4,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라목,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7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9조의3은 앞서 제시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야생동물 전시 행위 허가 및 금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 안 제9조의4는 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정원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안 제13조제3항제1호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²⁾하여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견 없음.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생 략)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 13. (생 략)

※개정안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2호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